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3가합6768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창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송한사, 박호경

피고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기형규, 김윤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김도형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양대권, 박정삼

변론 종결2020. 6. 24.

판결 선고2020. 8.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5,886,896,1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4.부터, 5,786,896,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13,932,826,1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25.부터, 13,832,826,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파이프라인에 의한 액체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은 석유화학제품 및 그 부산물의 제조, 저장,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의 각 석유화학 부문을 통합하여 석유화학제품 및 그 부산물의 제조, 저장,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나프타 수입기지 건설 사업 및 기본합의

○ 원고와 피고들은 1990. 8. 21. 여수시 H 일대에 보관능력 60만 톤 내외의 나프타(NAPHTHA)1) 보관시설과 접안능력 10만 톤의 부두를 건설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와 피고들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1990. 9. 11. 기본합의(이하 '이 사건 기본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프타(NAPHTHA) 수입기지 건설 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

I공단에서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참여회사(피고들)와 나프타 수입기지를 운영할 운영회사(원고)

간에 나프타 수입기지의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 사업개요

참여회사는 원료인 나프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여천시 H 일원에 부두, 하역, 저장 및 이송설비를 포함하는 나프타 수입기지를 신설코자 하며, 이를 위해 운영회사는 필요 부지를 확보하며, 참여회사는 공동으로 100,000DWT급 부두 1선좌와 관련 하역설비 및 소방안전 설비를 비롯한 공동부대설비를 건설하고, 또한 참여회사 각 사의 비용으로 각 사의 나프타 저장탱크 및 관련 부속설비와 이송펌프 및 배관건설을 추진한다.

3. 시설내역

- 1) 부두: 100,000DWT급 1선좌
- 2) 하역설비 : LOADING ARM 2SET, 하역배관 1식
- 3) 저장탱크 : 50,000kl 12기
- 4) 이송설비 : 이송배관 각 1식, 이송펌프 각 1식
- 5) 부대설비 : 유틸리티 공급설비, 수.배전 설비, 소방 및 안전설비, 용수 인입 및 처리설비, PAGING 및 통신설비, LIGHTING 설비, 조정실 및 MCC, 폐수처리 설비, 진입로 및 도로, DITCH 및 TRENCH, FENCE 및 GUARD HOUSE, 행정건물

4. 건설사업 추진방안

참여회사와 운영회사 간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 수행하도록 한다.

1) 업무구분

가. 운영회사 수행 업무 : 부지 확보, 주민 보상, 행정건물, GUARD HOUSE, FENCE 등의 설비 건설,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업무(부지 조성, 부두 축조, 관로, 탱크 건설 등)

나. 참여회사 공동수행 업무 : 부두 축조, 공동시설

다. 참여회사 각사 단독수행 업무 : 50,000kl 저장탱크 건설, 이송펌프 및 배관, GAUGING SYSTEM 및 계전설비

2) 비용분담

가. 운영회사 단독 부담 : 운영회사 수행업무에 따른 투자비 일체를 단독 부담

나. 참여회사 공동 부담 : 부두 축조 및 공동시설 공사수행에 따른 투자비 일체를 참여회사가 균등 부담

다. 참여회사 각사 단독 부담 : 각 50,000kl 저장탱크 및 탱크 관련 부대공사, 이송펌프 및 해당 구간까지의 이송배관 설치공사. 단, 이송배관의 설계, 시공비용에 대하여는 구간 별로 30%는 균등 부담, 70%는 배관 용적비로 분담하며, 저장탱크 설계비에 대하여는 균등 부담한다.

6. 소유권

참여회사와 운영회사 간에 공동으로 나프타 수입기지를 건설함에 따른 소유권은 아래와 같다.

- 1) 운영회사 단독 소유 : 나프타 수입기지의 부지, 행정동, FENCE 및 GUARD HOUSE
- 2) 참여회사 공동 지분 소유 : LOADING ARM 및 하역배관, UTILITY 공급 설비 등 수입기지 공동시설

- 3) 참여회사 단독 소유 : 각 나프타 저장탱크 4기 및 부속물, 해당 이송펌프 및 이송배관
- 단, 운영회사 소유로서 본 사업에 이용되는 토지는 탱크터미널로서의 기능이 지속되는 한 계속 제공되어야 하며, 대지사용료는 수입기지 운영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7. 나프타 수입기지의 운영관리

- 1) 나프타 수입기지 시설의 운전, 유지 관리와 납사의 보관 관리는 운영회사가 수행하며,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항시 유지 기록한다.

주요사항은 운영회사와 참여회사 사이에 사전에 협의 결정하며, 이를 위하여 각 사 대표로 구성된 "나프타 수입기지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2) 하역관리 : 나프타의 수입에 따른 통관 등의 하역 준비 작업은 해당 참여회사에서 수행하며, 검정의뢰, 계측준비, 하역 등의 하역 작업에 대하여는 해당 참여회사의 직원 입회하에 운영회사가 수행하도록 한다.

- 3) 화물취급 및 품질 검사 : 입고물량의 물량 및 품질 검사는 공인검정사의 SURVEY REPORT에 의하며, 출고량은 출고 시 직전의 재고량에서 출고 후 재고량을 감한 감소량으로 하되, 출고는 운영회사 및 해당 회사 계량직원 입회하에 운영회사 직원이 수행하도록 하며, 자연감모량의 파악을 위하여 매월 말 공인검사에 의한 계량을 실시한다.

4) 비용분담

가. 운전관리 비용

첫째,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참여회사가 균등 부담한다.

둘째, 입항 화물료 등 LOADING ARM에서 하역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참여회사 단독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비, 저장탱크에서 참여회사 공장으로의 나프타 이송 비용(이송펌프 동력비에 한함)에 대하여는 해당 참여회사가 부담한다.

셋째, 기타 운전관리 비용은 운영회사 관리비에 포함시킨다.

라. 운영회사의 운영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1) 수입기지 운영료 : 참여회사의 저장탱크 용량에 의해 참여회사가 부담하며, 요율은 추후 협의 결정하도록 한다.

(2) 화물조작료 : 운영회사가 참여회사의 나프타 하역, 보관, 출고,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화물 조작 요율은 추후 협의 결정하도록 하며, 참여회사는 매 3개월에 저장탱크 용량의 120% 이상에 대하여는 입고 물동량을 보장하여야 하고, 입고 화물이 없어도 해당 보장분에 대한 조작료를 부담한다.

5) INITIAL CHARGE 물량의 정산

참여회사 공동배관에 최초 하역시 CHARGE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참여회사의 균등 부담으로 정산하도록 한다.

8. 기타

1) 어느 일방이 본 나프타 수입기지 시설과 관련된 부지와 건축물 및 기타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 참여회사와 운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본 나프타 수입기지 시설과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장차 참여회사와 운영회사의 합의에 따라 용도를 폐지하거나 폐기, 철거할 경우 비용부담과 불용품 처분대금의 분배는 소유 지분 별로 한다.

3) 참여회사와 운영회사는 본 합의서에 명기된 조항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합의서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혹은 그 행사를 위임하지 못한다.

다. 나프타 수입 터미널의 건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기본합의에 따라 원고 소유의 여수시 H 일대 부지에 50,000kl 용량 저장탱크 12기, 이송배관, 이송펌프, 부두시설, 행정동 등의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나프타 수입 탱크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 한다)을 1992. 12.경 완공하였다.

라. 최초 사용료 합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터미널이 완공되기 직전인 1992. 11. 20.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터미널 사용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최초 사용료 합의'라 한다).

사용료(보관료) 등에 관한 합의서

이 사건 터미널의 건설주체인 운영회사(원고)와 참여회사(피고들)는 이 사건 터미널의 절대적인 안전 관리 및 원활한 나프타 보관 운영의 대가로 참여회사가 운영회사에 지급하는 사용료(보관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참여회사는 운영회사가 이 사건 터미널을 운영,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 운영비로 연간 2,766,000,000원을 운영회사에게 지급한다.
2. 참여회사는 이 사건 터미널 약 80,000평의 조성 및 수입기지 건설에 관련된 운영회사의 투자 금액에 대하여 지급이자 상당액 연간 1,986,000,000원을 운영회사에게 지급한다.
3. 참여회사는 이 사건 터미널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720,000,000원의 기본이윤(법인세 포함)을 운영회사에게 지급한다.
4. 참여회사는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의 합계 금액 5,472,000,000원을 보장 물동량(추후 결정)에 대한 연간 기본 사용료(보관료)로 운영회사에게 지급하고, 보장 물동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kl당 600원의 취급료를 지급한다.
5. 향후 이 사건 터미널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합의서의 내용을 수정 없이 반영하기로 한다.

산출근거 별첨

마. 운영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들은 1993. 1. 30. 이 사건 기본합의와 최초 사용료 합의의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터미널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터미널 운영계약서

제1조 (운영회사와 참여회사의 관계)

참여회사(피고들)의 나프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 완료 또는 건설 중에 있는 이 사건 터미널을 운영 및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운영회사는 참여회사를 위하여 해당 부지를 제공하고, 제반시설의 운영 관리, 저장화물의 취급 및 보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참여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터미널 사용료를 운영회사에게 지급한다.

제2조(시설의 소유권)

이 사건 기본합의에 따라 건설된 이 사건 터미널의 시설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단독시설 : 단독시설이라 함은 운영회사 및 참여회사가 비용을 각각 단독 부담하여 각 사의 주관으로 건설한 시설을 말하며, 그 소유권은 해당 각 사가 단독으로 갖는다.

가. 참여회사 단독 소유 : 각 참여회사의 저장탱크 및 부속물, 이송펌프 및 이송배관

나. 운영회사 단독 소유 : 이 사건 터미널의 부지, 행정동, FENCE 및 GUARD HOUSE 등 기타

2. 공통시설 : 공통시설이라 함은 참여회사가 공동비용으로 건설한 시설을 말하며, 그 소유권은 참여회사가 공동으로 갖는다.

가. 참여회사 공동 소유 : LOADING ARM 및 하역배관, 조정동 및 정비동 건물, UTILITY 공급시설 등

이 사건 터미널 공동시설

제3조(시설의 사용권)

참여회사는 운영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나프타 수입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그 사용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4조(운영회사의 수행업무)

운영회사는 이 사건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회사의 책임 하에 다음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부지제공 및 지상권 설정

가. 운영회사는 이 사건 터미널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동 부지는 탱크터미널로서 기능이 지속되는 한 계속 제공되어야 한다.

2. 운전 관련 업무

3. 점검, 정비보수에 관련된 업무

4. 이 사건 터미널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5. 기타 제5조 참여회사 수행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

제5조(참여회사 수행업무)

1. 참여회사 각 사의 단독 시설물에 대한 정비보수(일상적 점검 및 유지는 운영회사가 수행)

2. 참여회사 각 사 소유의 이송배관에 대한 점검 및 정비보수

3. 화물의 통관, SAMPLING, 검정의뢰 등 부두 접안 이전에 발생하는 하역 준비작업

4. 입.출고 계획의 통보

5. 이 사건 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업무

제11조 (이 사건 터미널 사용료)

1. 제1조의 이 사건 터미널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2. 이 사건 터미널 사용료는 기본료와 변동료로 구분한다.

3. 기본료는 운영회사의 이 사건 터미널 건설 투자비 및 보장 물동량(연간 기준 참여회사 각 사 입고량 각 96만㎥) 조작료를 포함한 연간 운영비를 반영하여 월간 고정금액으로 정하며, 참여회사 각 사의 저장탱크 용량(20만㎥)을 기준으로 한다.

4. 변동료는 참여회사 각 사가 보장 물동량을 초과하여 입고되는 초과 입고량에 대한 톤당 요금을 말한다.

제1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년으로 하고, 별도의 이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바. 사용료 약정

원고와 피고들은 1993. 1. 30.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아울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터미널 사용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이하 '사용료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터미널 사용료 약정서

이 사건 터미널의 참여회사(피고들)와 운영회사(원고) 사이에 1993. 1. 30. 체결한 이 사건 운영계약 제11조에서 규정한 이 사건 터미널 사용료(기본료와 변동료)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이 사건 터미널 사용료)

1. 기본료는 각 참여회사의 저장탱크용량 20만ℓ를 기준으로 각 사 매월 152,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2. 변동료는 참여회사의 보장 물동량(참여회사 각 사 물동량을 기준으로 하며 연간 각 96만kℓ로 함)을 초과하는 입고량에 대하여 초과량 kℓ당 6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의 조정)

1. 사용료는 소비자 물가지수 누계 10% 이상 변동시 조정할 수 있으며, 참여회사와 운영회사의 협의에 의해 조정한다. 사용료 조정시 고려되는 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운영회사는 운영회사의 결산자료 및 재무제표를 참여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본료 산출대상인 연간 운영비 중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나. 이 사건 터미널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의 신설, 개정, 공금리의 변동, 법인세율의 변동

2. 사용료 조정시점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며, 조정된 사용료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약정기간)

본 약정서의 약정기간은 원 계약인 이 사건 운영계약 제14조의 계약기간과 같이 한다.

사. 사용료의 조정

원고와 피고들은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인건비 변동, 유지관리비 변동, 제세공과금 변동, 금융 이율 변동 등의 제반사정을 반영하여 1996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1년에 각각 이 사건 터미널 사용료를 조정하였다.

아. 이 사건 운영계약의 종료 및 피고들의 이 사건 터미널 계속 이용

○ 1993. 1. 30. 체결된 이 사건 운영계약의 계약기간(20년)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원고와 피고들은 그 연장 내지 갱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그 금액에 관한 입장 차이로 인해 협의가 결렬되었고, 결국 이 사건 운영계약은 2013. 1. 29.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 이 사건 운영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현재까지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터미널을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다.

○ 이 사건 운영계약 종료 후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도의 사용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들은 기존에 이루어져왔던 사용료 산정 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피고 B는 2013년(2013. 1. 30.부터 2013. 12. 31.까지) 입고량 2,430,385.738ki에 대한 사용료 2,308,971,000원을, 2014년 입고량 2,832,383.397ki에 대한 사용료 2,622,097,800원을, 피고 C는 2013년(2013. 1. 30.부터 2013. 12. 31.까지) 입고량 5,800,923.621ki에 대한 사용료 5,182,033,000원을, 2014년 입고량 6,274,920.569ki에 대한 사용료 5,610,288,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내지 15호증, 을가 제1, 2, 5, 9호증, 을나 제1, 2, 4, 5, 8 내지 29, 34, 36 내지 38,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운영계약이 2013. 1. 29. 종료됨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터미널을 이용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하였다.

○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터미널의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993. 1. 30. 체결된 이 사건 운영계약이 20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2013. 1. 29. 종료되었음(이 사건 운영계약은 제14조에서 '별도의 이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터미널 사용료에 관한 입장 차이로 연장 내지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대로 종료되었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2) 2)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기본합의에 근거하여 이 사건 터미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원고가 수행하는 이 사건 터미널 운영 및 관리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등을 모두 아우르는 이 사건 터미널 이용에 관한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사용료 금액 등 이 사건 터미널 이용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정하는 별도의 약정인 이 사건 운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기본합의를 기초로 사용료를 다시 정해야 하는 상태일 뿐이다).

○ 이 사건 기본합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동의 자금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 터미널을 건설하여 이를 운영 및 이용하기로 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구조와 지위, 권리 및 의무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정한 근본적인 합의이고,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운영계약이나 최초 사용료 합의, 사용료 약정, 사용료 조정 등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기본합의를 바탕으로 이 사건 터미널의 실제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추가적, 개별적, 부수적 약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이 사건 기본합의 제7조 제4의 라.항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 금액이나 요율, 피고들의 보장 물동량 등에 관하여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운영계약과는 달리 이 사건 기본합의는 따로 계약기간의 정함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운영계약의 종료와는 별개로 이 사건 기본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 이 사건 기본합의는 제6조에서 이 사건 터미널의 소유 관계를 원고 단독 소유, 피고들 공동 지분 소유, 피고들 단독 소유로 구분하여 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원고 소유로서 본 사업에 이용되는 토지는 탱크터미널로서의 기능이 지속되는 한 계속 제공되어야 하며, 대지사용료는 수입기지 운영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7조에서 이 사건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하면서 운영회사인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터미널 시설의 운전, 유지·관리와 나프타의 보관·관리 업무, 운영과 관련된 자료 유지·기록 업무(제1항), 하역관리 중 검정의뢰, 계측준비, 하역 등의 업무(제2항), 화물취급 및 품질 검사 업무(제3항)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기본합의 제8조에는 '어느 일방이 이 사건 터미널 시설과 관련된 부지와 건축물 및 기타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 피고들과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제1항)과 이 사건 터미널 시설과 부지 및 건축물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폐기, 철거의 경우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제2항), '피고들과 원고는 본 합의서에 명기된 조항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합의서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혹은 그 행사를 위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제3항)도 존재한다.

○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터미널 사업의 진행 경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기본합의의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본합의 자체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터미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고, 아울러 이 사건 터미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고가 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의무와 함께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터미널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일종의 용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도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기본합의 규정들은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의 자금과 노력으로 함께 구축한 이 사건 터미널이 탱크터미널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한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계속하여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 사건 터미널의 기능이 유지되어 운영되는 동안에는 운영회사인 원고와 참여회사인 피고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도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 피고들이 이 사건 터미널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원고가 수행하는 이 사건 터미널 운영 및 관리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등을 모두 아우르는 이 사건 터미널 이용 권리 자체는 이 사건 기본합의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운영계약과 최초 사용료 합의, 사용료 약정, 사용료 조정 등을 통해 그 권리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달리 피고들의 그러한 권리가 오로지 이 사건 운영계약에 기하여 비로소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 이 사건 기본합의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피고들이 이 사건 기본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터미널을 이용할 경우 원고에게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운영계약이 종료되어 사용료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탱크터미널 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시가접근법(거래사례비교법) 방식에 의해 산정된 적정한 시가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 이 사건 운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기본합의와 최초 사용료 합의, 사용료 약정,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사용료 조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와 같은 기존의 사용료 약정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를 계속 지급하면서 이 사건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사용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 가사 이 사건 기본합의에 따른 사용료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사용료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가접근법 방식이 아닌 원가접근법 방식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적정한 사용료 금액은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사용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사용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사용료 금액의 산정

1) 기존의 사용료 약정의 적용 가부 ○ 피고들이 이 사건 터미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원은 이 사건 기본합의에 근거한 것인데, 이 사건 기본합의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요율,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피고들의 보장 물동량 등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료 산정 방법은 이후에 체결된 최초 사용료 합의, 이 사건 운영계약, 사용료 약정에 의해 비로소 정해졌고, 순차적인 사용료 조정을 통해 변경되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결국 이 사건 기본합의에는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이후에 마련된 구체적인 사용료 산정방법의 근거가 되는 최초 사용료 합의, 사용료 약정, 사용료 조정 등은 이 사건 운영계약에 부수한 것이거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사용료 약정은 이 사건 운영계약 제11조에 근거하여 위 운영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용료 산정방법을 정하기 위해 별도로 체결된 것이고, 사용료 조정은 사용료 약정 제2조에 근거하여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변경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최초 사용료 합의(1992. 11. 20.)는 시간적으로 이 사건 운영계약(1993. 1. 30.)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터미널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인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사용료 부분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고, 최초 사용료 합의 제5조에도 '향후 이 사건 터미널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합의서의 내용을 수정 없이 반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사용료 합의는 이 사건 운영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별도로 미리 정하여 둔 것으로서 이 사건 운영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그와 달리 이 사건 운영계약과 별개로 영구적인 사용료 약정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운영계약이 종료된 이상 그와 같은 기존의 사용료 약정도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는 기존의 사용료 약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적정한 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의 결과

이 사건에서 적정한 사용료 산정을 위해 원고와 피고들의 신청에 의해 여러 차례 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인 J은 아래와 같이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다(2013년을 기준으로 K당 사용료 단가로 산정된 금액만을 간략히 기재한다).

(1) 2018. 11. 14.자 최초 감정 결과

○ 시가접근법에 의한 산정 : 상한 1,989.809원, 하한 1,258.295원

○ 원가접근법에 의한 산정 : 1,293.76원

(2) 2019. 7. 17.자 보완 감정 결과

○ 시가접근법에 의한 산정(거래사례비교법에서 비교기업인 주식회사 K의 물동량을 피고들의 물동량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다시 산정한 감정 결과): 상한 1,989.809원, 하한 1,320.936원

○ 원가접근법에 의한 산정(최초 감정 과정에서 원가 산정을 위해 반영하였던 인건비 중 이 사건 터미널의 운영, 관리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부 인건비 내역을 제외하고 다시 산정한 감정 결과): 1,282.18원

(3) 2020. 5. 4.자 추가 보완 감정 결과

○ 원가접근법에 의한 산정(비용을 배분함에 있어서 나프타 회사와 비나프타 회사로 구분하여 1차 배분을 한 뒤 나프타 회사 내에서 피고들과 다른 회사로 구분하여 2차 배분을 하는 기존 감정에서의 배분 방식을 적용하되, 1차 배분과 2차 배분 모두 동일하게 '입고량과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다시 산정한 감정 결과): 1,226.78원

○ 원가접근법에 의한 산정(피고들이 직접 납부하는 직접비용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비용을 배분함에 있어서 1차 배분과 2차 배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들과 다른 회사들로 구분하여 비용을 배분하는 새로운 배분 방식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한 감정 결과). 다만, 비용의 배분 기준을 '입고량과 매출액 평균'으로 삼을지 또는 '접안시간과 매출액 평균'으로 삼을지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고, 공통비용 항목 중 4개 항목(임차료, 수선비, 지급수수료, 용역비)을 비용에 포함시킬지 또는 제외시킬지에 따라 다시 2가지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총 4가지 경우로 각각 산정되었다.

[케이스 1] 입고량과 매출액 평균 기준, 공통비용 4개 항목 포함 : 1,053원

[케이스 2] 입고량과 매출액 평균 기준, 공통비용 4개 항목 제외 : 870.108원

[케이스 3] 접안시간과 매출액 평균 기준, 공통비용 4개 항목 포함: 777.074원

[케이스 4] 접안시간과 매출액 평균 기준, 공통비용 4개 항목 제외 : 642.528원

○ 원가접근법에 의한 산정(비용을 배분함에 있어서 나프타 회사와 비나프타 회사로 구분하여 1차 배분을 한 뒤 나프타 회사 내에서 피고들과 다른 회사로 구분하여 2차 배분을 하는 기존 감정에서의 배분 방식을 적용하되, 공통비용 항목 중 3개 항목(임차료, 수선비, 지급수수료)의 일부를 제외하고 다시 산정한 감정 결과): 1,249.79원

나) 적정한 사용료 산정방식의 결정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4 내지 7, 12 내지 21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내지 29, 36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각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본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보다 적절한 산정 방식은 시가접근법 방식이 아닌 원가접근법 방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각 방식의 내용 및 장·단점

○ 시장접근법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는 거래 가능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특정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며 그 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가격을 산정하게 되고, 원가접근법은 상품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제공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총 원가를 기준으로 제공자의 적정 마진을 가산하여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 시장접근법의 경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산출함으로써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없는 방식이어서 표준화된 상품이나 용역이 아닌 경우 시장가격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원가접근법의 경우에는, 상품이나 용역 제공자의 투입 원가 및 적정 마진을 보장할 수 있고,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공정한 가격 협상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입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공정한 가격 산정이 어렵고, 적정 마진을 결정함에 있어서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2) 이 사건의 특징 등 반영

○ 이 사건 터미널은 석유화학공업의 기초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나프타를 수입하기 위해 건설된 대규모 수입기지로 나프타 저장탱크와 이송배관, 이송펌프, 부두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사회기반시설이다. 그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시설 건설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사업 초기 리스크가 큰 반면, 시설 건설 후 장기간 이를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여 이익을 얻는 사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 이 사건 터미널은 사업 추진 시작 단계에서부터 피고들이 참여하여 시설 건설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였고, 이 사건 터미널을 구성하는 시설 중 부지와 행정동 등 부대시설과 같은 원고 단독 소유 시설 외에 나프타 저장탱크와, 이송배관, 이송펌프 등의 주요 시설이 피고들의 소유이며, 부두시설 또한 원고와 피고들이 이를 공동으로 건설하였고,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지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총 사업비 약 880억 원 중 원고가 약 300억 원을, 피고들이 약 580억 원을 각 지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터미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약 300억 원의 사업비 중 158억 원 가량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는데, 사업 초기 원고가 이 사건 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들이 원고가 부담하는 차용금 금융이자 상당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피고들은 사용료 중 기본료 항목에 위 차용금 금융이자 상당을 포함시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위와 같은 이 사건 터미널 사업의 경위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이 사건 터미널 이용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단순히 탱크터미널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다른 탱크터미널의 이용관계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이 사건 터미널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징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비록 피고들의 이 사건 터미널 사용료 산정의 근거가 되었던 이 사건 운영계약과 그에 부수하거나 일체를 이루는 최초 사용료 합의, 사용료 약정, 사용료 조정 등이 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계약 내지 약정 등은 이 사건 기본합의를 기초로 이를 구체화하거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운영계약 종료 이후의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계약 내지 약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이 사건 사업의 계속성 등을 참작할 때, 그러한 고려 없이 기존의 권리의무관계를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 이 사건 기본합의와 이를 구체화하는 이 사건 운영계약, 최초 사용료 합의, 사용료 약정, 사용료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위를 보면, 이 사건 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피고들로 하여금 일정한 규모의 거래량을 유지하도록 강제하여 이른바 보장 물동량을 책정하고 그 보장 물동량에 상응하는 사용료인 기본료를 정하였으며, 보장 물동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관하여는 초과 물량의 킬당 단가를 정하였다[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보장 물동량에 적용된 사용료 단가(2,600원)에 비하여 초과 물량에 적용된 사용료 단가(600원)가 훨씬 저렴하다는 것인데, 이는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가가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지 않음을 시사하고,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과 주식회사 K을 동등한 선상에 놓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또 하나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고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계약 내지 약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본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된 산출근거 등의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터미널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 즉 인건비, 경비용역비, 일반관리비(복리후생비, 유지보수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등) 등의 원가를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시 사용료를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원고와 피고들은 사용료 약정 제2조를 근거로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인건비 변동, 유지관리비 변동, 제세공과금 변동, 금융 이율 변동 등의 제반사정을 반영하여 1996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1년에 각각 이 사건 터미널 사용료를 조정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터미널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의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사용료도 이에 연동하여 변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상과 같은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및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및 각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특징 등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사용료 산정방식은 원가접근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³⁾ (3) 시가접근법 방식에 의한 사용료 산정의 곤란

○ 이 사건과 같은 탱크터미널 이용관계는 통상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거래 자체의 특성 상 공정한 시장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보인다.

○ 시가접근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비교 대상과 감정 대상 사이의 차이점을 고려한 보정이 이루어지는데, 각 탱크터미널의 개별적인 이용관계나 특성이 현저히 달라 보정을 거치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탱크터미널 이용자로서 단순히 본인들의 저장시설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여하였다는 특징이 있는바, 이러한 특징 내지 차이점이 시가접근법에 의한 감정 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 실제로 감정인 J은 시가접근법에 의한 사용료 감정 과정에서 이 사건 터미널과 다른 탱크터미널의 거래 사례를 통해 적정한 시장가격을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주관성이 과도하게 개입되어 감정 결과로 제시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나프타 회사인 주식회사 K의 단일사례만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사용료를 산정하였다(게다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K의 경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사용료 산정 방식을 참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주식회사 K은 이미 이 사건 터미널이 완공된 상태에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책정한 회사로서, 이 사건 터미널 사업 초기에 참여하여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입한 피고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거래 물동량에 있어서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그와 같은 차이점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K의 단일사례 비교를 통한 시가접근법에 의한 사용료 산정은 그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4) ○ 감정인 J은 시가접근법에 의한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주식회사 K과의 비교를 통한 사용료 상한 금액을 제시하고, 동시에 이 사건 터미널 사업과 관련된 피고들의 특징 등을 고려할 경우 감액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한 사용료 하한 금액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사용료 하한 금액은 1995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K과 피고들이 지급한 평균 사용료 금액의 차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일 뿐 사용료 조정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위와 같은 상한과 하한 범위 방식에 의한 사용료 산정도 그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이 사건 감정 결과 중 적정 사용료 산정 방식의 채택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4 내지 7, 12 내지 21, 25, 26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내지 29, 36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각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본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적정한 사용료의 ki당 단가 금액은 감정인 J의 2020. 5. 4.자 추가 보완 감정 결과 중 접안시간과 매출액 평균 기준, 공통비용 4개 항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된 777.074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시가접근법에 의한 감정 결과의 배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기본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보다 적정한 산정 방식은 시가접근법 방식이 아닌 원가접근법 방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정인 J의 2018. 11. 14.자 최초 감정 결과 중 시가접근법에 의한 산정 결과인 상한 1,989.809원,

하한 1,258.295원은 채택하기 어렵고, 2019. 7. 17.자 보완 감정 결과 중 시가접근법에 의한 산정(거래사례비교법에서 비교기업인 주식회사 K의 물동량을 피고들의 물동량을 기준으로 보정하여 다시 산정한 감정 결과) 결과인 상한 1,989.809원, 하한 1,320.936원도 채택하기 어렵다.

(2) 직접비용 제외 및 비용 배분 방식의 채택

○ 원가접근법에 의한 감정 결과 중 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직접비용으로 분류되어 포함된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임차료, 수선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항목의 경우 피고들이 이를 직접적으로 지출하여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이를 원가 산정에서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위와 같은 직접비용은 원고의 계산으로 지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단지 피고들로부터 이를 받아 납부하는 역할을 하는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달리 이 사건 기본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의 경우에는 피고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 비용을 배분함에 있어서 나프타 회사와 비나프타 회사로 구분하여 1차 배분을 한 뒤 나프타 회사 내에서 피고들과 다른 회사로 구분하여 2차 배분을 하는 방식의 경우, 1차 배분과 2차 배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들과 다른 회사들로 구분하여 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에 비하여 두 단계의 배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배분금액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앞서 살펴 본 피고들의 이 사건 터미널 이용관계와 지위에 있어서의 특수성과 다른 업체들과의 차이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차 배분과 2차 배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처음부터 피고들과 다른 회사들로 구분하여 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감정인 J의 각 감정 결과 중에서, 직접비용을 제외하고 비용 배분에 있어 피고들과 다른 회사들로 직접 구분하여 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된 2020. 5. 4.자 추가 보완 감정 결과를 일응 적정하게 산정된 사용료 단가 금액으로 삼을 수 있다.

(3) 비용 배분의 기준 채택

(가) 비용 배분 기준에 따른 4가지 감정 결과

감정인 J의 2020. 5. 4.자 추가 보완 감정 결과는, 비용의 배분 기준을 '입고량과 매출액 평균'으로 삼을지 또는 '접안시간과 매출액 평균'으로 삼을지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고, 공통비용 항목 중 4개

항목(임차료, 수선비, 지급수수료, 용역비)을 비용에 포함시킬지 또는 제외시킬지에 따라 다시 2가지로 구분하여 총 4가지 경우로 다시 분류된다.

(나) 입고량 기준과 접안시간 기준

○ 비용의 배분 기준을 '입고량과 매출액 평균'으로 삼을지 또는 '접안시간과 매출액 평균'으로 삼을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터미널을 운영 및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 사건 터미널 이용자들 별로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 이 부분에서 문제되는 공통비용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인데, 입고량은 각 이용자들의 거래 물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응 공통비용 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 그러나 나프타 회사인 피고들은 입고되는 물량을 로딩암(LOADING ARM) 설비를 통해 대형 선박에서 곧바로 피고들 소유의 이송배관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비나프타 회사들의 경우에는 입고되는 물량의 높은 점도(粘度) 특성으로 인하여 로딩암 설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이송 가능 용량이 적은 플렉시블 호스를 개별적으로 연결하여 이송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이에 따른 원고의 인력 투입량과 투입시간도 많다. 따라서 단순한 입고량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부두 접안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고의 실제 소요 비용, 즉 인력 투입량과 투입시간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비용 배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입고량과 매출액 평균 기준이든 접안시간과 매출액 평균 기준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매출액 요소를 포함하는바, 상품의 품질에 큰 차이가 없어 통상적으로 시세에 연동되어 가격이 정해지는 나프타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매출액 요소에는 이미 상당 부분 입고량 요소가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사한 요소가 중복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는 입고량과 매출액 평균 기준보다는 접안시간과 매출액 평균 기준이 객관적인 원가 산출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 따라서 감정인 J의 2020. 5. 4.자 추가 보완 감정 결과 중 입고량과 매출액 평균을 비용 배분의 기준으로 삼은 것들은 적정한 사용료 단가 금액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다) 공통비용 항목 중 4개 항목 제외 여부

○ 공통비용 항목 중 4개 항목(임차료, 수선비, 지급수수료, 용역비)을 비용에 포함시킬지 또는 제외시킬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4개 항목의 공통비용 중 오직 나프타 회사와 관련된 비용과 오로지 비나프타 회사와 관련된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그중 상당 부분은 나프타 회사와 비나프타 회사 모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비용으로 보인다.

○ 특히 감정인 J의 2020. 5. 4.자 추가 보완 감정 결과 중 일부는 위 4개 항목의 공통비용을 오직 나프타 회사와 관련된 비용과 오직 비나프타 회사와 관련된 비용, 나프타 회사와 비나프타 회사 모두와 관련된 비용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지 않은 채 위 4개 항목에 해당하는 공통비용 전부를 모두 제외시켜 사용료를 산정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

○ 아울러 여기에서 논의하는 위 4개 항목의 공통비용은 피고들과 다른 이용자들 사이에 이를 배분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어 그 비용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경우 위 4개 항목 중 임차료, 수선비, 지급수수료와 그 명목이 같은 직접비용 항목을 모두 제외시킨 다음 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4개 항목을 공통비용으로 포함시켜 산정하는 방법이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단정 짓기도 어렵다.

○ 그러므로 감정인 J의 2020. 5. 4.자 추가 보완 감정 결과 중 위 4개 항목의 공통비용을 제외시킨 것들은 채택하기 어렵고, 위 4개 항목의 공통비용을 포함시켜 공통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을 통해 산정된 결과들이 보다 적절한 사용료 단가 금액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피고들이 이 사건 기본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의 k당 단가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가장 적정하게 산정된 감정 결과는, ① 원가접근법에 의해 산정하되, ② 직접비용을 제외하고 비용 배분에 있어 피고들과 다른 회사들로 직접 구분하여 비용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③ 비용 배분의 기준을 접안시간과 매출액 평균으로 삼고 공통비용 중 4개 항목을 비용에 포함시켜 산정된 2020. 5. 4.자 추가 보완 감정 결과 중 777.074원(케이스 3)이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들에 대한 추가 사용료 청구의 당부

○ 이 사건 운영계약의 종료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의 k당 단가 금액은

777.074원인바, 피고들의 입고량에 따라 각 연도별 사용료 금액을 계산하면, 피고 B의 경우 2013년(2013. 1. 30.부터 2013. 12. 31.까지) 입고량 2,430,385.738kl에 대한 사용료는 1,888,589,566원(= 2,430,385.738kl × 777.074원,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4년 입고량 2,832,383.397kl에 대한 사용료는 2,200,971,495원(= 2,832,383.397kl × 777.074원)이고, 피고 C의 경우 2013년(2013. 1. 30.부터 2013. 12. 31.까지) 입고량 5,800,923.621kl에 대한 사용료는 4,507,746,921원(= 5,800,923.621kl × 777.074원), 2014년 입고량 6,274,920.569kl에 대한 사용료는 4,876,077,626원(= 6,274,920.569kl × 777.074원)이다.

○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 각 사용료 금액을 상회하여 피고 B은 2013년 사용료로 2,308,971,000원을, 2014년 사용료로 2,622,097,800원을, 피고 C는 2013년 사용료로 5,182,033,000원을, 2014년 사용료로 5,610,288,2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광영

판사이재민

판사안현정

- 1) 원유를 증류할 때 유출되는 탄화수소 혼합물로 석유화학공업의 기초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 2) 이 사건 운영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원고는 1995년 기본료 차감약정의 독소조항을 통해 피고들이 원고의 희생 아래 폭리를 취해 온 것처럼 주장하나, 위 약정은 원고 스스로의 의사에 기해 체결된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아울러 비나프타사의 사용료를 근거로 하는 주장 역시 나프타사와 비나프타사의

사용료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주식회사 K의 경우도 비나프타사의 사용료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4) 감정인 J은 '만약 단일사례를 시가접근법(거래사례비교법)의 비교 사례로 감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감정 결과는 기본 전제의 합리성이 결여됩니다. 다만, 본 감정인은 비교 기업인 주식회사 K이 굴지의 대기업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가로 사용료 계약을 하지 아니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주식회사 K의 단일사례 비교를 통한 시가접근법 적용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